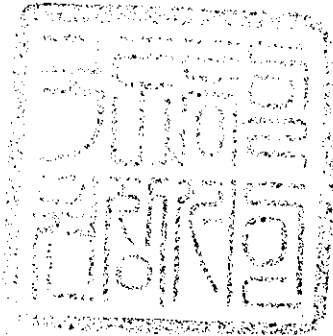


北韓의 家族法과 傳統的 家族制度

— 韓國法の 民族史的 正統性 立證을 위하여 —

1975. 8.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5年度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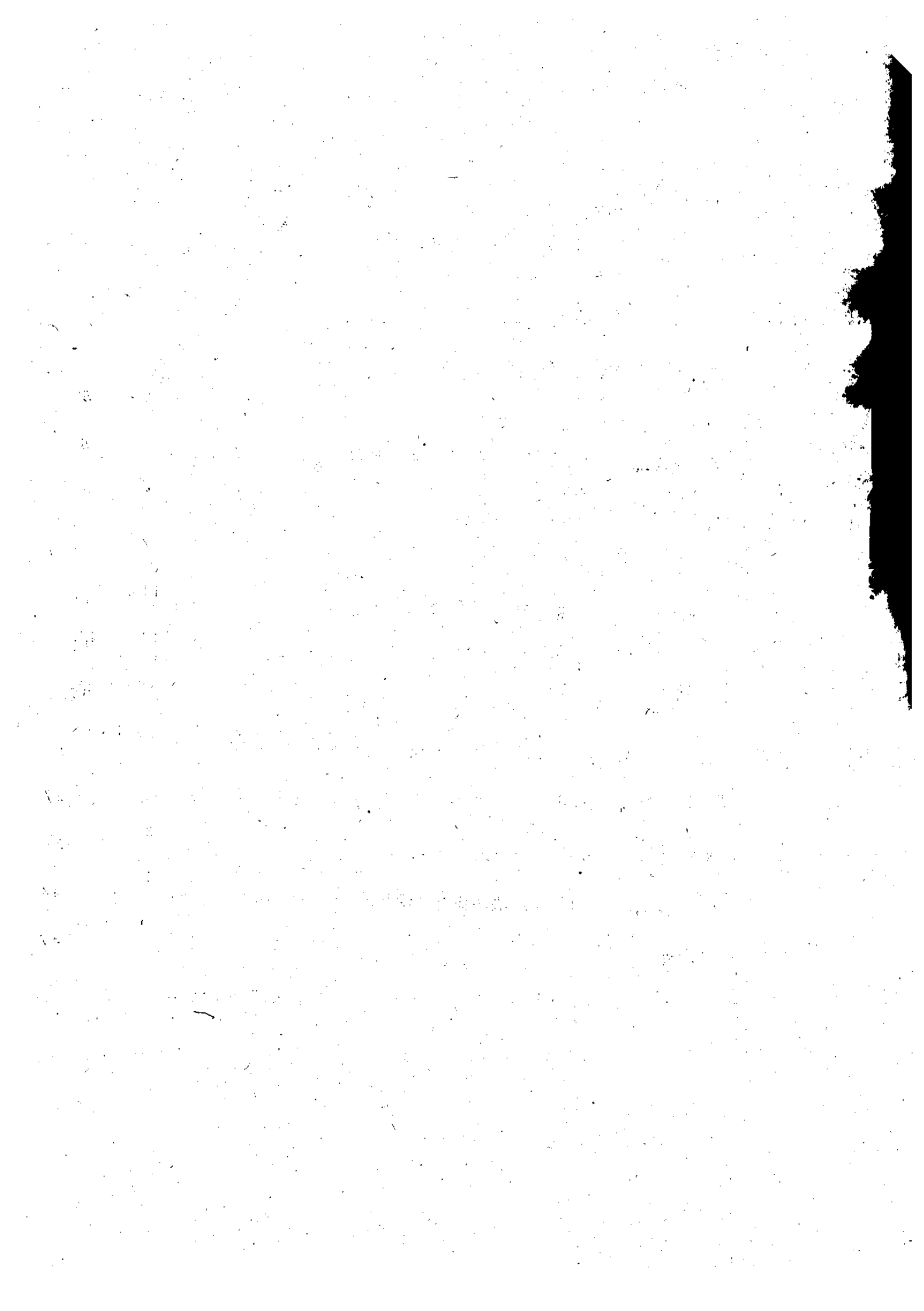
1975. 8.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李 熙 鳳

目 次

I. 序 論	3
- 南北韓 家族法 比較研究의 必要性 -	
II. 本 論	5
第一節 韓国家族制度의 傳統과 南北家族制度의 體系上의 比較	5
一、家族制度의 特性	5
二、宗法制度의 展開	7
第二節 北韓家族法과 傳統的 家族制度	11
一、北韓社会와 傳統的 家族法 意識	11
二、婚姻法과 傳統的 家族制度	19
1. 婚姻의 成立에 미치는 家族制度의 影響	19
2. 婚姻生活에 미치는 家族制度의 影響	27
三、親子法과 傳統的 家族制度	34
四、其他의 家族法關係와 傳統的 家族制度	44
III. 結 論	47
- 家族制度의 諸要因에서 본 韓國法의 正統性 -	



I . 序 論

- 南北韓家族法 比較研究의 必要性 -

韓半島는 古代에 高句麗, 百濟 및 新羅 등의 三國이 鼎立하여 拮抗한 때도 있기는 하였으나, 新羅統一期 이후로는 單一民族으로서 한 나라를 이루고 高麗, 李朝 등을 거치는 동안 近千五百年을 지내 왔으며 그 疆域이 넓지도 아니하였으므로 韓民族은 團合하여 政治, 經濟 및 文化등 諸部面에서 統一을 이루어 왔다. 그러므로 1910年 日本에게 強占되어 36年을 지내는 동안 日帝의 혹심한 이론바 「內鮮一體政策」의 民族抹殺凶計下에서도 韓民族은 그 自主성과 傳統을 固守하며 乙酉解放을 맞이하였다.

그런데 乙酉解放 후 強大國間의 戰後處理로 말미암아 韓半島는 北緯 38度線을 境界로 하여 南에는 美軍이 進駐하고 北에는 소련軍이 占拠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南에는 1948年 國際聯合의 後援下에 大韓民國이 建國되었으나 北에는 소련의 強壓으로 北傀政府가 세워져, 韓半島는 南北으로 分斷되어 對峙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共產主義의 好戰性은 6.25의 南侵을 비롯하여 잇따른 作亂으로 民族의 分裂, 葛藤을 造成하며 지내온 것이 지금까지 一世代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南·北의 分離는 우리의 單一民族 歷史에 있어 일찌기 없던 不幸이라, 統一은 韓民族의 念願이요 意志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大韓民國의 朝野는 한결같이 統一을 志向하여 노력하고 있거니와, 統一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그 동안 分斷된 社會에서 釀成된 南北의 各部面에 걸친 차이는 統一韓國에 있어 여러 가지 後遺症을 남길 것임이 틀림없다고 본다. 따라서 그 後遺症을 어떻게 극복하며 融和시키느냐는 것은 統一後의 繁雜中에 갈팡질팡 당황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統一의 그날을 展望하면서 南北의 政治, 經濟 및 文化의 여러 分野에 걸쳐 그 相異點을 究明把握하여 그 克服과 融和策을 講究하여 두는 것이 後日을 위하여 매우 緊要한 일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에 筆者는 그 하나의 作業으로 南·北이 解放 이후 民主体制과 共產体制의 對立된 社會로 變遷하는 過程에서 家族制度에 있어서는 어떠한 差異를 顯出하고 또한 統一의 날에 그 差異가 극복되고 또는 調和될 수 있는가의 與否를 이 小稿에 있어 考察하여 볼까 한다.

Ⅱ . 本 論

第一節 韓国家族制度의 傳統과 南北家族制度의 体系上의 比較

一 家族制度의 特性

古代의 韓国家族制度의 特性이 어떠한 것이었나에 관하여는 文獻이 매우 드물어 그 자세한 것을 알 수 없다. 그러나 古代의 家族制度는 近世의 韓國人에게는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論外로 한다.

그런데 韓國에서 지금까지 家族生活의 規律에 規範이 되는 것은 高麗 中葉 中國으로부터 儒敎가 傳來함에 따라 韓國에 移植되고, 또한 李朝에 들어와서 朱子學을 國學으로 정하여 儒敎立國을 標榜함과 더불어 法制化하게 까지 된 宗法制度이다.

宗法制度란 中國에 있어 父系社會가 確立된 周代에 成立하고 그 후 漢, 唐, 宋 및 明 등 歷代漢族王朝를 거치는 동안 逐漸完成된 家族制度로서 男系血統主義와 族外婚制를 原則으로 하고 있다.

물론 宗法制度의 모습은 韓, 中 兩國의 家族制度의 細部에 이르기까지 서로 일치될 수 없으나, 宗法制度의 基本的인 두 原則은 역시

韓國에 있어서도 鐵則으로 지켜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느 면에서는 더욱 形式代된 느낌도 없지 않다.

男系血統繼續主義란 男子孫에 의하여 家系를 繼承시키는 原則으로 男子孫이 斷絶되었을 때에는 男系血統을 같이 하는 本宗(同姓同本者) 中の 侄行의 者에 한하여 入養하고 繼嗣토록 하는 것으로서 女子의 家系의 繼承이 排除된다. 族外婚制란 男系血統을 같이 하는 本宗間의 男女는 血緣의 遠近을 막론하고 婚姻하지 못하며 婚姻은 本宗 이외의 男女 사이에서만 가능한 婚姻制度를 말한다.

이와 같은 宗法制度는 韓國에 있어 7百餘年에 걸쳐 形成되고 固守되어 왔으므로 日帝가 韓國을 併呑한 후에도 韓國의 뿌리 깊은 宗法制度를 變革할 수 없어 旧慣이란 이를 아래 그대로 存続시키고 (朝鮮民事令 第11條), 몇몇 規律만을 改正하여 日本民法典의 規定 - 離婚請求權, 能力的 補充機關(保佐, 後見), 限定相統 또는 財産의 分離 - 을 依用토록 하였을 따름이었으니, 解放에 이르기까지 宗法制度는 韓國의 傳統的 家族制度로서 그 原型을 喪失함이 없이 南北에 亘하여 維持되어 왔다고 하겠다.

二、宗法制度의 展開

그러면 解放이 될 때까지 南北에 公通으로 規範力을 지니고 있던 傳統的 家族制度인 宗法制度가 解放 후 韓國과 北韓에 있어서 각각 어떠한 變革을 이루어 왔는가를 살펴 보자.

南韓에 있어서는 解放 후 美軍政時期와 大韓民國이 建國된 후에도 現行 民法典이 施行되기 전까지는 解放 전의 旧法의 効力이 持續 되었으므로, 家族制度의 規律은 解放 전과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韓國民法草案이 발표된 후 韓國의 傳統的 家族制度를 유지할 것이냐의 與否에 관하여는 輿論이 자못 沸騰하였다.

그 輿論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同草案과 같이 男系血統繼續主義와 族外婚制의 두 原則을 바탕으로 하는 傳統的 家族制度의 骨格을 유지하면서 戶主權 또는 財產相統 등과 같은 극히 反民主的인 規律에 관하여만 先進諸國의 立法을 參照하여 男女平等에 의하여 民主化 하자는 漸進的 意見이고, 또 하나는 傳統的 家族制度를 一擲하고 西歐와 같이 核家族制로 改編하는 한편, 男女平等의 徹底를 期하자는 急進論이다.

그러나 본래 家族法은 民族의 習俗 또는 倫理를 바탕으로 하는 沿革的이며 民族的 色彩가 강한 保守的 性格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近世에 이르러 西歐諸國의 家族法이 그 기본에 있어서는 동일한 「패턴」이면서도 각각 다른 특유의 制度를 내포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家族法의 特性에 基因하는 것이다. 前述한 두 見解 중 前者는 이와 같은 家族法의 特性에 符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後者는 그러한 家族法의 特性을 外面한 假想的 理論追求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知覺 있는 人士는 대체로 前者에 意見을 모았고, 일부 西歐追從의 急進者만이 後者에 따랐으므로 결국 漸進論에 立脚한 草案이 큰 修正 없이 通過되어 制定된 것이 1960年 1月 1日부터 施行되고 있는 現行 家族法이다.

따라서 韓國의 家族法은 韓國의 傳統的 家族制度의 骨格을 유지 하면서 民主化를 志向한 것으로 韓國의 正統을 繼承한 立法이라 하겠다.

한편 北韓에 있어서의 家族에 관한 規律은 어떠한가. 北韓에는 解放과 더불어 소련軍이 進駐하여 소련의 設計下에 北韓을 소련의 衛星國化하기에 狂奔하였다. 그리하여 소련은 그의 품에서 길들인 金日成을 내세워 勞動黨과 北傀政府를 掌握하게 하여 그들의 指示下에 北韓社會의 社會主義化를 촉진하였다. 이에 北韓의 이른바 人民委員會는 北韓에 있어서의 既存의 法令은 帝國主義的 封建的 法律이라 하여 이의 撤廢를 宣言하고 家族規律의 社會主義的 轉換을

위하여 1946年7月 「北朝鮮男女平等權에 관한 法令」과 다음해 1月の 「封建的 遺習, 殘滓에 관한 法令」을 基本法으로 公布하였으며, 잇따라 同法令施行令, 裁判指示 또는 內閣決定 등을 制定 또는 決定하였다.

叙上の 諸規律을 綜合하여 검토하면, 韓國의 傳統的 家族制度의 脊柱的 原理는 男系血統에 의한 家系永統의 想定인데, 同法은 이러한 傳統的 家族制度의 原理를 一擲하고 一代의 核家族制에로의 轉換을 想定함으로써, ㉑ 伝來의 戶主 또는 宗族 등의 宗法的 親族系列을 否認하고, ㉒ 在來의 嫁娶制에 따르는 妻에 대한 夫의 支配를 排除하여 夫婦間의 對等的 地位를 確定하며, ㉓ 그리고 伝來의 祖業 思想에서 유래한 遺産에 대한 男子相統制를 廢棄하고 財產相統에 있어서의 男女平等의 原則을 闡明하는 한편, 社會主義者의 常套의 言說인 父母, 宗族 또는 鄉党的 干涉 없는 婚姻과 離婚의 絶對的 自由의 強調 등이 家族規律改革의 大綱이다. 이와 같이 北韓은 叙上の 改革의 大綱만을 규정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民法典의 制定이 없어 家族法의 詳細한 規定도 없으니, 北韓은 家族의 規律에 한하여는 革命段階의 中間時代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위의 南. 北의 家族法을 對比하면, 韓國의 家族法은 共產主義者들의

言必稱 내어치는 封建的 殘滓인 傳統的 家族制度를 支柱로 殘存시키면서 漸進的 民主改革을 追求함에 반하여, 北韓의 家族法은 傳統的 家族制度를 一擲하고 社會主義革命을 追求하니, 兩者는 對蹇的이라 共通性이 없는 것으로 速斷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北韓의 家族에 대한 規律은 家族에 대한 社會主義革命의 大綱만을 指示할 따름이고 實定法的인 詳細한 規定이 欠如되어 있는 오늘, 실제로 北韓民의 家族生活의 實態가 과연 傳統的 家族制度의 習俗과 倫理에서 絶緣되고 있는지는 저으기 의심스럽다. 오랜 세월에 걸쳐 遵守된 民族的 習俗 또는 倫理는 새 理念의 提示만으로 一朝에 扞拭될 수는 없는 것이다. 北韓에 있어서도 그 例外일 수는 없는 듯, 傳統的 家族制度에 따르는 北韓民의 家族生活의 意識的 無意識的 惰性を 外面할 수 없어 口實을 붙여 傳統的 家族制度에 緣由한 習俗이나 倫理가 北韓에 있어 家族規律의 原則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볼 때, 아직까지는 南北韓의 家族制度에 있어서는 그 底流에 共通性이 있는 것으로 推測된다.

다음에서는 그와 같은 共通性이 얼마나 존재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北韓의 現行 家族法 중 가장 家族制度的이라고 생각되는 規範을 구체적으로 밝혀 보고자 한다.

第二節 北韓家族法과 傳統的 家族制度

一、北韓社会와 傳統的 家族法 意識

1974년 1월 13일자의 평양방송¹⁾은 최근 北韓의 婚姻 및 祭祀 風俗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논급한 바 있다.

즉, 「社會主義的 生活樣式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낡은 社會에서 넘어 온 온갖 뒤떨어진 生活樣式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지금 우리 노동자들의 생활에는 낡은 社會의 生活習性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잔치하는 것을 놓고 보아도 일부 사람들은 음식을 평강히 차리고 요란하게 하여야 잔치가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음식을 평강히 차려놓고 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낭비하는 것보다 음식을 간단히 차려놓고 동무들이 몇몇 모여 신랑 신부를 축하하며 즐겁게 노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도 낡은 생활습성의 하나이다. 죽은 사람의 무덤이나 사진앞에다 많은 음식을 차려 놓고 절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죽은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그럼으로 제사날에 무덤에다 꽃을 갖다 놓던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죽은 사람의 지난날의 투쟁을 회상하면서 그가
다 하지 못한 일을 살아 있는 사람들이 마저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자는 결의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는 근로자 속에서 낡은 생활습성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인
생활양식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야 하겠다」.

이 두 토막의 길지 않은 論評을 통해서 우리는 北韓當局의
의도야 어떻든, 지금까지도 과거의 여러 慣習들이 北韓人의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北韓人들의 習俗的 意識에 대한 言及은 이에 局限되지
않고 여러군데서 발견될 수 있다. 여러가지의 習俗的 意識 가운데서
家族法規範과 연결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다시 들 수 있다. 첫째의 事例. 두명의 자식을 거느린 한
여자가 여섯명의 前妻所生이 있는 집에 재혼해 왔는데, 繼母에
대한 前妻所生들의 반발과 排他感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고 한다. 이러한 일은 큰 아이일수록 더욱 심하였는데
특히 열아홉살의 딸아들은 繼母가 들어와서 달포가 넘도록 말한마디
바로 건네는 법이 없다가 조금만 언짢으면 「당장 나가라」고 큰
소리를 치며 화풀이를 하는 것이 일수였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와
같은 혼인생활을 甘受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오로지 가정

분위기의 改善을 위하여 노력할 따름이었다. 이 얘기는 전국어머니대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었으며, 그 대회는 그 여자의 사상을 모범적인 것으로 찬양하였다.²⁾

둘째사례. 老父母를 모시고 있는 어떤 남자는, 그의 노동의 대가로 받은 分配物과 돈을 처분함에 있어, 자기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와 상의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늙은 부모에게 맡겼다가 필요할 때 찾아서 쓰도록 했다. 이 사람의 행위는 北韓의 傳統的인 풍습인 敬老思想의 發現이라 하여 協同組合내에서의 家庭生活의 標本이 되었다.³⁾

이러한 사례와 이러한 사례속의 規範的인 意識이 自由西方社会에는 물론 共產主義의 宗主社会인 소련에서 인들 適用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례를 소련社会에 한번 갖다 얹어 보아라. 정말 어처구니 없고 엉터리 같은 말이 될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는 여기서 생겨나는 차이를 社會主義諸國속의 北韓社会의 특성이라고 보는 것이다. 또 이것을 北韓社会의 傳統的 家族制度的인 要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위에서 例示한 두가지 사례는 바로 傳統的 家族制度的 要因이 北韓社会에 尙存하고 있음을 밝혀 주었을 뿐만 아니라, 家族制度的 意識이 아직까지 社會的 規範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家族制度的 意識이 갖는 이러한 規範性은 곧 北韓人의

法律生活를 規律해 주는 중요한 尺度로 사용되어 결국 北韓法
形成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다.

무릇 法意識이라는 것은 그 社會의 法秩序가 이끄는 바에 따라
造成, 變形, 또는 消滅될 수 있는 것이나, 그 반면 法意識은 또한
社會의 法秩序를 그렇게 함에도 크게 작용한다. 法意識의 先行性은,
法을 經濟의 上部構造라고만 보는⁴⁾ 社會主義法理論에서 그 특정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이것은 특히 法이 정비되지 못한 中間法社會
에 있어서는 더욱 빛나게 되어, 法이 空白되는 틈을 타 바로
法秩序로서 또는 法으로서 군림하게 되는 것이다. 「남은 생활양식은
사람들의 사상의식 수준과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
번에 다 없애려 하여도 안되며 강제적 방법으로 없애려고 하여도
안된다. 우리의 생활속에 남아 있는 남은 습성은 사람들의 사상의식
이 발전하는데 따라 하나씩 점차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적인 생활양식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먼저 남은 생활양식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⁵⁾」는 생각은, 곧
法意識이 지니는 先行性을 설명해 줌과 아울러 그것이 規範的
價值를 지니고 있음을 설명해 주는 論評의 하나이다.

진실로 北韓은 지금 法이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中間法時代에
처해 있다.

따라서 北韓의 家族制度的 意識은 충분히 規範的 効力を 지니게 되어, 이미 制定된 法律 및 法令등과 더불어 北韓法規範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北韓에 있어서의 傳統的 家族制度的 規範的 効力を 찾기 위하여, 다시 前述한 두가지의 事例로 돌아가 보자. 이 事例로 부터 우리는 두가지의 커다란 家族制度的 原理를 抽出해 낼 수 있다.

「여자가 남자 집에 再婚해서 들어 가는것」, 「前妻의 所生들이 繼母를 보고 당장 나가라고 하고 있는 것」등은, 이 社會의 婚姻 形態가 아직 嫁娶制에 얽매어, 父系本位の 家族制度的인 原則을 실천하고 있음을 뜻한다. 「老父母를 모시고 살고 있는 점」과 「老父母의 의사를 존중함이 곧 美德이라고 보는 점」등은, 東洋的 集團主義와 家父長權尊重을 그 내용으로 하는 또 하나의 家族制度的 原理의 表現에 지나지 않는다. 父系本位思想과 集團主義思想은 家族制度的 여러 특징 중 가장 핵심적인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수백년 동안 전해져 온 韓國的 傳統意識 바로 그것이다.

지금껏 家族制度的 意識에 젖어오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오늘날의 北韓에서의 家族制度的 意識의 實存이 그렇게 새삼스러운 것이 될 수 없으나, 그러나 法을 비롯한 모든 社會體制를 社會主義化 하였다고 하고 또 家族의 社會化를 무엇보다 자랑하는 北韓社會에서

아직까지 그러한 意識이 屢연히 存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커다란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社會主義體制에로의 急轉換을 목적으로 한 北韓은, 그동안 그들의 當面課題로서 社會主義體制를 뒷바침하는 經濟立法의 制定을 서두른 바 있으나, 이에 못지 않게 또한 家族關係法의 改廢에도 열을 올렸다. 왜냐하면 家族制度는 그것이 지니는 階級性과 非生産性으로 말미암아 명백히 反社會主義的임에 틀림없는 것임으로, 社會主義式의 國家統制經濟의 실현을 위하여는 종래의 舊習인 家族制度의 打破없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男女平等權에 대한 法令」을 비롯하여 「同法令 施行細則」, 「封建遺習 殘滓를 退治하는 法令」, 「憲法」등 적지 않은 一連의 家族法規를 制定 實施함으로써 종래의 家族制度的인 인습을 한꺼번에 털어 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바 家族의 社會主義化는 과연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 北韓社會에서 家族主義는 과연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긍정하기에는 北韓의 現實이 너무 逆行的이다. 그들이 이미 털쳐 내었다고 하는 家族制度의 殘滓는 너무나 많이 남아 있어, 社會主義의 家族原理로써는 도저히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넘치고

있음은 위에서 보아 온 몇몇 가지의 (실정만으로써도 충분하다.

명백히 北韓社會는 오늘날에 와서도 家族制度的인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家族制度的인 意識은 政治, 經濟, 社會, 文化등 北韓의 모든 부문에 걸쳐 작용하고, 그것은 北韓法의 形成과 維持에도 빠짐 없이 작용하고 있다.

家族制度的 諸要因은 분명히 共產主義의 革命理論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그러나 共產主義의 또 하나의 原理인 民族自決에 관한 레닌의 原則은 共產國家의 少數民族保護原則과 더불어, 어느 면에서는 傳統的 家族制度的 存統을 위한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東洋的 家族制度的 傳統的 存在는 마르크스主義의 實行을 위하여 적지 않은 試練을 안겨 준다. 「해이자드」教授가, 東洋體系 (Oriental Systems)에 있어서는 家族制度的 영향으로, 마르크스主義改革의 導入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것⁶⁾도 바로 이러한 사정을 말해 준다.

일찍부터 北韓의 最高指導理念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들을 고수할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민족적 특수성을 무시하는 교조주의적 경향에 대하여서도 경계⁷⁾」한다고 하면서, 나아가서 「주체를 확립하지 못하고 교조주의와 형식주의의 틀 속에 있을 때에는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모든 문제들에

깊이 파고 들어 갈 수 없다⁸⁾」고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제시된 내용은 곧 마르크스·레닌주의의 基本原理들과 民族的 特殊性은 北韓 社會에서 兩立될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며, 나아가서 韓國的 傳統主義는 필요에 따라서는 民族的 特殊性이라는 말을 쓰고 北韓社會에 實存할 수 있음을 暗示해 주는 것이다. 民族的 特殊性의 강조는 요즘에 와서, 金日成 唯一思想의 政治的 理念을 높임에 따라, 더욱 더 高潮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있다.

傳統的 家族制度의 諸要因은 또한 共產主義의 經濟秩序와 정면으로 모순된다. 그러나 이 要因중의 어떤 것은 그들 秩序의 能率의 향상을 위하여 적지 않게 貢獻한다. 믿을만한 어떤 人士의 証言⁹⁾에 의하면, 北韓集團農場의 最末端組織인 「分組」가 흔히 一家族 전체로써 편성되어 농사에 임하고 있고, 集團農場의 指導者는 가능하면 分組의 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강제한다고 한다. 그들이 노리는 점은 勞動能力있는 壯丁의 親族的 紐帶意識이 親族인 老弱者의 몫까지 일해줄 것을 기대하는 데 있다. 親族的 紐帶意識의 都給勞動에의 活用은 비단 農事에만 적용될 수 없고, 널리 都給制勞動 전반에 활용되리라고 믿어지니, 北韓에 있어서의 傳統的 家族制度의 維持는 다시 한번 實用的 價值를 지니는 것으로 믿어진다.

叙上에서 우리는 傳統的 家族制度의 여러 習俗 중 어떤 것은,

지금까지도 역시 北韓에서 規範力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으며, 또 規範力을 지닐 수 밖에 없는 社會經濟的인 사정을 아울러 보아 왔다. 다음에서는 北韓法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家族制度的 要請을 反映하고 있는가를 찾아 보기로 하겠으나, 北韓의 모든 法을 천착할 수는 없고, 다만 北韓家族法중 특히 家族制度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간추려 범으로써 這間의 사정을 밝혀 보고자 한다.

二、婚姻法과 傳統的 家族制度

1. 婚姻의 成立에 미치는 家族制度의 영향

1) 登錄婚主義와 事實婚 問題

「男女平等權에 대한 法令 施行細則」과 「身分登錄에 관한 規定」에 의하면, 婚姻은 登錄機關에 의하여 登錄되어야만 비로소 成立된다고 하여 有效한 婚姻의 成立을 위하여는 婚姻登錄이외의 어떠한 形式節次도 요구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約婚 또는 어떠한 實質的 要件을 갖춘 관계라 하더라도 所要의 法定節次를 다하지 않는 한, 法的인 保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婚姻關係의 모든 實質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登錄만을 결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法律效果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國家 내지는

社会的 不利益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登錄婚主義下에서의 事實婚
問題는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며, 이 문제는 婚姻을
國家에서 承認하는 형식을 취하는 國家에서는 보다 실질적이며 심각
한 문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지금껏 民主諸國에
비하여 社會主義國家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것도 이러한
實質上的 차이 때문인 것이다.¹⁰⁾

事實婚問題에 대한 北韓의 입장은 北韓社會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더욱 중대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身分登錄
法이 適用될 수 없는, 오래전부터 성립된 婚姻의 수가 엄청나게
많고, 또 韓國動亂을 통하여 빚어지는 未申告婚등이 또한 적지 않게
實在 하고 있기 때문이다.

登錄婚主義의 철저는, 適法한 實質을 갖춘 婚姻關係가 또한 適法한
登錄節次에 따라 登錄되어야 함을 당연히 要求하므로, 登錄되지 아니
한 婚姻은 論理上으로 보아 결코 法律上 有效한 婚姻으로 될 수
없다. 그렇지만 사실상 어떤 경우에는 엄격한 登錄要件만을 주장할
수 없는 社会的으로 타당한 夫婦關係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이러한
婚姻關係는 法律上 보호하여야 할 實益이 충분하므로, 이에 따라
婚姻登錄의 엄격성은 자연 그러한 정도에서 늦추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登錄되지 아니한 婚姻關係중에서 어떠한 것이 事實婚으로서 法的
保護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北韓法上 明文이 없는 터이지만,
外國法の 解釋을 통해서 또는 北韓의 社會實情으로 미루어 보아
다음과 같은 婚姻關係를 명백히 列挙할 수 있게 된다.

하나는 身分登錄法이 施行되기 이전에 이미 法的으로나 社會적으로
夫婦로서 인정되어 온 종래의 婚姻關係를 들 수 있고, 다른 하나는
韓國戰爭 休戰에 의하여 새로 編入된 지역의 住民으로서 大韓民國
統治期間중에 婚姻한 當事者사이의 婚姻關係를 들 수 있다.¹¹⁾

北韓의 實際는 이 두 경우의 婚姻關係는 어느 것이든 登錄婚과
同一視하는 것이 一般論인데, 다만 이러한 婚姻關係가 法律婚으로
해석됨에는 적어도 婚姻의 實質을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어떠한 婚姻關係가 婚姻의 實質을 갖추었느냐에 관하여는
여러가지 각도에서 검토되어야 하겠으나, 대체로 「婚姻條件에 適合
하고 있고 또 公開된 婚姻儀式의 舉行에 의하여, 社會의 慣習上
이미 合法的인 地位를 取得한 것」이 그 주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定義는 1943년 2월 4일에 공포된 中共點領地區의 晉察冀
邊區婚姻條例중 「婚姻登記 問題에 관한 通知」에서 따낸 것이나,
中國과 類似한 家族制度의 沿革을 가진 北韓婚姻法 解釋에 있어
중요한 뜻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2) 禁婚範圍

어떠한 사람들 사이에 婚姻이 가능한가 라는 문제는, 당해 사회의 習俗 및 傳統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北韓婚姻法 중 가장 傳統的인 색채를 띠게 된다. 北韓에서는 해방전까지 北韓人의 身分關係를 規律하고 있던 日帝의 모든 法律이 失効되었고 이를 規律할 새로운 法의 制定이 없으므로, 禁婚範圍를 정하는 데도 역시 解釋論에 의할 수 밖에 없다.

소련 婚姻法上的 禁婚範圍는 直系血族사이, 全血 또는 半血의 兄弟姊妹사이, 및 養親子사이의 婚姻만을 禁止하고 있다.¹²⁾

이에 비하여 百代之親과 同姓不婚의 沿革을 가진 中共의 婚姻法은 소련과 전혀 사정을 달리한다. 同婚姻法에 의하면, 直系血族사이, 全血· 또는 半血의 兄弟姊妹사이의 禁婚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5代(8寸)내의 傍系血族間에 있어서의 禁婚問題는 地方慣習에 따라 정해진다고 한다.¹³⁾

婚姻倫理에 있어 中共과 비슷한 家族制度的 傳統을 가지고 있는 北韓에서는 中共法의 태도를 거의 그대로 活用할 수 있을 것이다. 北韓家族法의 代表的 見解에 의하면, 「새 가족법전 작성에 있어서 그의 기본적인 원칙적인 礎石에 관해서는 社會主義的 家族法典

으로서의 공통성이 貫通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정하면서, 그러나 個別的 問題들에 관해서는 우리 現實生活의 구체적인 특수조건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며, 社會主義國家들의 立法例라고 하여 그것을 기계적으로 模倣導入하여서는 안 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된다¹⁴⁾」고 하고, 또 이러한 理論的 根拠에서 「우리나라에서 결혼이 금지되는 사람들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중국적으로 立法的 解決을 기대케 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이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우리 인민들 사이에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어 온 生活風俗과 감정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니, 이 각도에서 볼 때 아마 다른 어떤 社會主義國家들의 立法에서 보다는 우리에게 그 범위가 더 넓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¹⁵⁾」라고 立法的 提起를 한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立法的 提起이며 禁婚範圍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立法論에서 적지 않은 示唆를 받는다. 왜냐하면 北韓은 지금 社會主義를 實現하는 過程에 있고 이 立法論이 이의 實現을 위한 것인 이상, 禁婚範圍에 관한 北韓의 現實과 規範은 적어도 이 立法論보다 넓은 것이 추측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北韓의 禁婚範圍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해석 되어야 한다.

첫째, 소련 및 中共의 立法例를 참작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兩國이 인정하는 범위는 禁婚範圍로 받아 들이는 일이다. 따라서 直系血族사이, 全血 또는 半血의 兄弟姉妹사이를 비롯하여 적어도 8 寸이내의 傍系血族으로서 北韓의 旧慣이 通婚을 차지고 있는 범위가 우선 禁婚範圍라고 볼 수 있다.

8 寸이내의 傍系血族이란 文理上 8 寸이내의 父系血族과 8 寸이내의 母系血族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禁婚의 範圍가 後者の 것 까지 포함하느냐의 与否에 대하여는 뚜렷하지 못하다. 男女平等의 原則을 엄격히 실천하고자 하는 社会主義的 法原理에 따른다면 그 범위는 後者에 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禁婚範圍를 설정하는 北韓 婚姻法의 태도가 결코 韓國慣習法이 정하는 범위를 넘어 설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8 寸이내의 母系血族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사이의 婚姻을 금지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와같은 형편은 中共婚姻法이 「기타 5代(8寸)이내의 傍系血族

사이의 婚姻禁止問題는 慣習에 따른다.¹⁶⁾」고 하고 있는 점과,
晉察冀邊區婚姻條例가 8寸이내의 傍系血族사이의 婚姻을 금하면서
다른 表兄弟姊妹¹⁷⁾에 해당하는 傍系血族사이의 婚姻은 꼭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明文한 점¹⁸⁾ 등으로 미루어 보아 명백해 진다. 傳統的
家族制度로 말미암아 禁婚範圍가 오히려 축소되는 현상이라 하겠다.

둘째로는 北韓特有의 家族制度的 意識 構造와 慣習에 따라 禁婚
範圍가 擴大解釋되는 면인데, 주로 姻戚사이의 禁婚問題가 이에 해당
한다. 매우 抽象的이기는 하지만 傳統的 家族制度가 現實的인
意義를 이루어 주는 곳이라 하겠다.

어떠한 姻戚사이의 婚姻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禁婚
케 하느냐의 문제는 어려운 일이다. 이와같은 婚姻의 禁止問題는
其餘의 禁婚問題에 비하여 더욱 沿革的이므로 당해 社會의 婚姻倫理와
깊숙한 관련을 맺는다. 姻戚 사이의 禁婚問題를 다루는 外國의
立法例는 대체로 두가지 類型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最少限의
범위를 明文하는 法制로서 독일¹⁹⁾, 自由中國²⁰⁾ 등이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혀 침묵을 지키고 있는 法制로서 소련, 中共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禁婚範圍에 대하여 전혀 明文하고 있지 않은 소련이라고
해서 直系姻戚사이의 婚姻마저 인정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中共法이 소련法처럼 역시 直系姻戚사이에만 국한시키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中共의 革命根拠地法인 陝甘察辺 区婚姻條例가 「3寸이내의 姻戚」사이를 禁婚하고, 또 하나의 革命根拠地法인 晋察冀辺 婚姻條例가 「5寸이내의 傍系姻戚으로 世代가 다른 자 사이」를 禁婚하고 있는 規定들을²¹⁾, 그것들이 결국은 오늘날의 中共法解釋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論理는 北韓法을 해석함에 있어 종래의 韓國慣行을 그 기준으로 삼게 해 주게 한다. 姻戚婚禁止에 대한 韓國의 慣行이 어떤 것이었나에 대하여는 現行韓國法 解釋에 있어서도 難問題중의 하나로 되고 있으나, 現行韓國民法上의 禁婚範圍가 「8寸이내의 姻戚과의 禁婚²²⁾을 규정하고 있어, 姻戚사이의 禁婚의 範圍는 어떤 나라보다 넓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韓國法의 規範은 그것이 곧 北韓人들의 意識과 直結된다 고는 할 수 없으나, 그것이 韓國 社會의 慣行인 한에 있어서는, 北韓人들의 禁婚意識形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2. 婚姻生活에 미치는 家族制度의 影響

1) 序 說

家族制度의 원리에 따르면 婚姻은 男女사이에 終生の 結合 關係의 始源을 이루어 주게할 뿐만아니라 家族生産의 源泉을 形成 해 주는 것이므로, 이러한 社会制度下에서는 男女의 結合이 단순한 個人의 結合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家族制度的인 目的意識에 의한 結合이라 여겨진다. 다시 말하면 婚姻生活에 들어가는 各当事者는 配偶者란 身分關係를 얻는다고 보다는 家族成員의 地위를 얻는면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社会下에서의 形便은 家族 相互間의 分散을 싫어하고 大家族的인 經濟單位의 維持를 要求하므로 配偶者는 다른 相對配偶者와의 사이에서만 家族關係를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配偶者의 家族들과도 必然的으로 特別한 身分關係를 맺게 됨이 보통이다.

오늘날의 一般的인 傾向은 民主主義 社会이건 社会主義 社会이건 家族制度的인 羈絆을 벗어나서 配偶者로 하여금 家族制度的인 身分關係를 얻는 制度를 취하지 않는 실정이지만, 몇몇 國家 即, 家族制度的인 沿革과 傳統을 가지고 또 그 社会的 現實이 家族制度的인 倫理를 脱皮하지 못하고 있는 社会에서는 아직도 家族制度의

法制를 갖고 있는 곳이 없지 않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配偶者 特히 婚姻生活에 있어서 当事者의 지위인 妻로서의 지위 이외에도 相對方 配偶者의 親族이란 身分뿐만 아니라 相對方配偶者의 親族과도 姻戚關係라는 身分關係를 形成하여, 婚姻, 扶養, 相統關係 등에서 親族으로서의 일정한 權利義務를 取得한다. 23)

北韓社會를 살펴 보면, 그들은 女性들로 하여금 「수천 년내의 滅示와 학대 이중삼중의 억압에서 해방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政治, 經濟, 文化等 各方面에서 男子와 同等한 權利를 가지고 積極的으로 行動할 수 있게」 24) 하기 위하여, 또 「女性을 위한 完全한 自由를 爭取하지 않고서는 프로레타리아트는 完全한 自由를 獲得할 수 없을 것이다」 25) 라는 베닌의 敎示를 實現하기 위해서도 理論上으로는 夫婦 사이에 夫婦라는 身分關係 以外에 어떠한 特別身分關係도 인정하고자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夫婦사이의 婚姻倫理는 政治体制의 變化에도 不拘하고 쉽사리 全面的으로 바뀔 수 없는 것이고 또 수백년 수천년의 沿革을 가진 人類의 家族制度의 本質 역시 國家制度의 急變만으로는 全面的으로 變質될 수 없는 實在이다. 北韓이 비록 社會主義革命을 完遂하였다고 하나 아직 여러가지 面에서 男女平等이 完成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 國民들의

意識 역시 家族制度的인 傳統意識에 머물고 있는 점이 많다.

北韓法이 社會主義理念의 實現이라는 當面課業에 直面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婚姻效果問題를 規律하는 實際問題에 들어가서는 여전히 傳統的인 實際를 보여주는 것도 그들의 現實上の 要請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관한 한, 婚姻의 效果面에서 본 北韓法은, 비슷한 家族制度의 沿革을 갖고 있는 中共法과 類似점이 많고 蘇聯法과는 必然的으로 많은 相異점을 보여준다.

2) 姻戚關係

一般的으로 姻戚이라함은 婚姻에 의해서 配偶者 一方과 相對便 配偶者의 血族 사이에 發生하는 身分關係를 말한다. 따라서 觀念上으로는 血族의 配偶者, 血族의 配偶者의 血族, 配偶者의 血族, 配偶者의 血族의 配偶者를 姻戚의 範圍속에 넣을 수 있다. (26)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姻戚은 위와 같은 觀念上の 概念 全體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姻戚으로서 現實的으로 法律上 또는 慣習上の 効力이 미치는 範圍內에 있는 사람사이를 把握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法上的 姻戚概念의 把握도 이러한 각도에서 檢討되어야 妥當하게 된다.

北韓法은 蘇聯法을 形式的으로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姻戚關

係에 대한 直接規定은 물론 間接規定조차 두고 있지 않으나 여러 가지 事情을 추측컨대 보다 넓은 姻戚關係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北韓은 지금 「女性の 法律行為能力, 親權行使에 관한 制限, 其他 女性の 權利를 제한한 法令과 規則은 一切 無効로 한다」²⁷⁾고 하는 立法精神에 비추어 교아, 女性은 종래의 家族生活의 굴레에서 벗어나 一夫一妻制에 입각한 小家族的인 生活을 한다고 하나, 現實的인 家庭生活은 이와 같지 아니하고 오히려 嫁取_女制의 形式에 따른 婚姻을 하게 되어 시부모를 비롯한 夫家의 一團의 親族들과 共同生活을 함이 통례라고 한다. 왜냐하면 北韓女性의 社會參與은 아직 充分한 保障을 받지 못하여 女性들의 意識도 男子와 對等한 지위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社會의 道德觀마저 家族制度的인 色彩가 짙기 때문이다.²⁸⁾

이와 같은 형편으로 말미암아, 結合된 姻戚 相互間은 一團의 家族生活을 해야 할 宿命이 생길 뿐만아니라 이의 運營을 위하여 扶養, 婚姻等의 法律行為를 함에 있어 갖가지 權利義務를 取得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親族으로서의 法律效果의 發生은 姻戚間에 現實的인 生活集團을 形成하는데 必要하기 때문이며 결코 그들이 姻

戚關係라는 身分關係를 形成하였다는 理由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現實적으로 같은 家族經濟를 이루는 姻戚 사이에만 서로 扶養의 權利義務를 지며 그렇지 않은 姻戚間에는 扶養의 權利義務가 發生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論理는 婚姻關係에도 適用될 것이다. 따라서 慣習上 婚姻關係에 屬여 있는 모든 親族 사이를 禁婚토록 할 수는 없으므로, 오직 現實적으로 親族이라 意識되는 者 사이의 婚姻만을 禁止하게 하고 기타의 範圍의 姻戚間的 結合은 各者의 生活感情 내지 社會意識에 맡겨 놓고 있는 것 같다. 中共婚姻法이 婚姻障礙事由를 比較的 자세히 規定하면서도 姻戚間的 禁婚을 規定하고 있지 않는 態度 역시 北韓의 경우와 같이 解釋되어야 할 것이다.

3) 夫婦의 姓

종래의 韓國의 傳統的 特色을 그대로 지니는 것으로서 姓不變의 原則이 있다. 一般적으로 夫婦의 姓에 관하여는 대체로 夫婦別姓, 夫婦共同姓, 夫婦合姓 따위로 大別할 수 있고 各法制는 그 社會의 風俗, 慣習 또는 民族的 意識 如何에 따라 判異한 모습을 보여 준다.

蘇聯法에 의하면 「夫婦는 婚姻 당시 그 希望에 좇아 夫婦의

一方의 姓을 그들의 公同의 姓으로 採択하거나 또는 夫婦 各자의 婚前姓을 계속 使用할 수 있다」²⁹⁾ 고 하여 夫婦別姓의 原則과 夫婦共同姓의 原則 중 어떤 것을 採하든 當事者의 自由意思에 쫓는다고 한다. 또 同法은 「聯邦構成共和國法令은 合姓을 使用할 夫婦의 權利를 定할 수 있다」³⁰⁾ 고 함으로써 蘇聯邦構成共和國 중 合姓의 慣習을 가지고 있는 共和國에서는 그 地方의 固有의 慣習을 答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蘇聯은 姓의 使用에 있어 劃一主義를 避하고, 또 姓을 特定血族, 特定 階級表示의 方法으로 使用될 수 있는 從來의 舊習을 脫皮하고자 努力하고 있으나, 實際慣行은 지금도 女子가 男子의 姓을 따르는 共同姓使用 다시 말하면 男子姓追從의 西歐傳統社會의 慣習을 쫓고 있다. ³¹⁾

北韓의 現行法의 內容은 蘇聯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이룬다.

韓國의 從來의 慣習은 姓이 男系血族의 表示라고 보는 것이 一般的인 常識이므로, ³²⁾ 血緣의 變化가 있을 수 없듯이 姓의 變化도 있을 수 없다고 본다. 姓不變의 法理가 이것이고 또 이 原理는 家族制度의 오랜 習俗을 通하여 鐵則으로 굳어졌다.

勿論, 北韓法에는 姓에 대한 直接規定이 없으나 從來의 韓國慣習인 姓不變의 原則은 당연한 法理로 되어 왔다. ³³⁾ 姓不變의 原

則은 그 韓国的 沿革이야 어떻든 우연이긴 하지만 女姓의 權益을
보호하고자 하는 現代의 最新思潮와 일치하는 것이다.

姓不變의 原則에 대하여는 現實的으로 다음의 두가지 問題가 제
기된다.

첫째로, 公民들의 姓名變更의 경우를 公示하고 그 變更節次를 規
定한 「公民들의 身分登錄에 관한 規定」 第15條와 第18條가 가
지고 오는 問題이나, 이 規定은 과거 日帝下에서 政治活動이나 또
는 다른 原因으로 말미암아 본래의 姓과 다른 姓을 使用해 왔기
때문에 다시 본래의 自己姓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돕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곧 一般的으로 姓不變의 可
能性を 示唆해 주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4)

둘째로, 異姓養子를 收養한 경우에 養子は 養父의 姓을 따를 수
있다고 한다. 戰後 戰爭孤兒에 대한 社會扶助를 實現하고자 하는
北韓의 實情을 미루어 보아 異姓養子の 姓變更은 現實的으로 必要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異姓養子の 姓變更은 韓國慣例³⁵⁾에서 보
아 아주 새로운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養子の 姓變更의 原
則의 새로운 例外를 이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같이 北韓은 婚姻에 의해서도 姓의 變更을 가져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경우에도 姓不變의 原則이 깨어지지 않고 있다.

三. 親子法과 傳統的 家族制度

1. 序 說

父母와 未成子女의 關係를 規律하는 法은 夫婦關係를 規律하는 婚姻法과 아울러 社會主義家族法의 重要한 部分을 이루고 있다. 北韓親子法이 어떤 性質을 갖는 것인가를 한 마디로 要約하기는 어려운 일이나, 이 法의 使命 역시 共產主義의 建立에 바쳐진 것이므로, 자연히 民主諸國의 그것과는 根本적으로 다른 點이 나타나게 된다.

北韓親子法의 밑바닥을 흐르고 있는 커다란 두 가지의 흐름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하나는, 子女에 대한 父母의 權利義務의 實現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平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北韓家族法이 입각하고 있는 男女平等의 原則으로 부터서도 당연히 나오는 것이려니와 父母의 權利의 本質 자체가 그렇게 要求한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子女에 대한 父母의 權利와 義務는 共產主義建設者의 道德律의 精神으로써 行事하여, 이

렇게 함으로써 子女가 共產主義者로서 유용한 存在로 成長될 수 있도록 養育하는데 있다.

父母의 權利가 이와 같이 그 根本的 性格을 달리함에 따라 父의 特權的 地位를 인정하는 家族制度的 여러 原理는 어떤 點에서 보더라도 당연히 배격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事實 共產主義的 諸理念은 親子 사이의 權利義務의 發生事由, 親의 權利義務의 性質 親子 사이의 扶養, 後見 및 保佐 等の 여러 親子法上的 基本問題를 解決해 주는 絶對的인 標準이 되고 있고, 그것이 또한 北韓親子法의 特徵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北韓親子法의 모습을 共產主義的 法の 理念만으로써 一貫되어 있을 것인가. 그들이 排除코자 한 傳統的 家族制度的 殘滓는 과연 払拭되어 있는가. 이것을 토대로 認容하기에는 그들의 法制와 現實이 너무나 여러 點에서 逆行的이다. 다음에서는 北韓親子法 중 가장 家族制度的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點을 說明함으로써 北韓法の 또 다른 하나의 特徵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2. 子女의 姓名과 父系血緣

傳統的 風習과 觀念에 쫓아 子女의 姓은 당연히 父의 姓을

따른다. 父 不明의 子女에 대하여는 母의 姓을 따를 수 있는 例外가 인정되나, 父姓追從의 法規는 北韓法上 極히 當연한 論理로 되어 있다. 일단 母의 姓을 따랐다 하더라도 나중에 父가 確定되면 그 父의 姓으로 子女의 姓이 變更되는 事實은, 아무리 보더라도 父系的이다.

子女의 이름은 出生登錄을 함에 있어 父母가 지어준 바에 따라 記載되며 一生 동안 變更되지 않음을 原則으로 한다. 그런데 보통 子父의 이름을 選擇함에 있어서 형제들 사이에서 共通되는 한 글자를 끼게 하는 行列表示를 하거나, 또는 先祖의 이름자와 同一한 글자를 피하는 風習도 아직까지 인정되고 있다. 36) 이 중 특히 行列을 취하는 慣行은 入養時에 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北韓의 實情에서는 「入養과 關聯하여 養子의 이름도 變更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養親의 親子女들이 風習에 의하여 이름자 중의 한자를 共通으로 하고 있을 때 養子의 이름에도 그 共通의 글자를 넣어 줌으로써 養親과 養子 사이를 이름에서 까지 親父母 子女의 사이와 同一하게 하여 親子女와 養子와 사이를 兄弟姊妹와 同一한 外形까지」⁽³⁷⁾ 갖추고자 하고 있음은 특히 留意할 만한 일이다.

3. 繼親子關係에 관한 問題

再婚을 한 配偶者의 一方에게 前婚關係에서 出生한 所生子가 있으면, 그 前婚所生子와 相對便配偶者 사이에는 남과 다른 일정한 身分關係가 發生할 수 있다. 傳統的으로 使用되어 온 繼親子關係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繼親과 繼子 사이에서 發生되는 身分關係의 性質이 어떠한 것인가, 어떤 範圍에 있는 사람 사이를 把握하여 繼親子로서의 法律效果를 부여하느냐. 이들 사이에 특별한 身分關係가 있다고 전제할 때 과연 그들 사이에 具體적으로 어떠한 種類의 權利義務를 負擔하게 되는가에 關하여는 각 國家의 法과 意識에 따라 자못 다른 바 있다.

(傳統的 家族制度의 法制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社會에서는 그들이 취하는 婚姻形態가 嫁娶制를 취할 수밖에 없으므로 繼母의 繼子 사이에는 당연히 특별한 身分關係가 發生되지만, 繼父와 繼子 사이에는 어떠한 身分關係도 發生되지 아니한다. 또 繼母와 繼子 사이에는 法定親子關係에 까지 類推되므로 이들 사이는 實親子關係와 똑같은 包括的 權利義務를 서로지게 되는 것이다. (38)

이에 反하여 社會主義諸國의 基本的인 立場은 原則적으로 繼親과 繼子 사이의 특수한 身分關係의 發生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그들이 서로 같은 家族共同生活을 하게 되고, 또 未成子女는 누구의 손에 의하든 養育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生活上의 利益과 未成子女의 保護³⁹⁾를 위하여 부득이 그들 사이에 일정한 權利義務를 인정한다. 또 그들 사이의 權利義務가 이러한 根拠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그 權利義務의 範圍는 傳統的 家族制度의 法制에서 보는 바와는 달리 언제나 現實적으로 必要한 範圍에 限定되며, 그리고 일단 그러한 權利義務를 인정하는 이상 傳統的 家族制度의 法制와는 달리 또한 언제나 繼父와 繼子에 까지 그 範圍를 넓히고 있다.

北韓은 蘇聯과 마찬가지로 繼親子關係에 있어 社會主義의 原型을 原則적으로 따르고 있으나, 그들의 家族制度的 沿革때문에 이점 역시 蘇聯과 많은 차이점을 이루고 있다. 北韓法에서는 繼親과 繼子の 權利義務를 定하여 주는 法文이 없다. 따라서 여기에 관한 한, 전적으로 解釋論에 依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北韓法의 解釋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특히 繼親과 繼子 사이의 權利義務의 存否와 範圍 등은, 蘇聯法의 原理와 現行 慣行의 두 개 原理의 消化에 의해서 劃定되어지기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北韓法의 內容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北韓法에서 인정될 수 있는 繼親子關係의 法的 效果는 蘇聯法과

많은 點에서 같다고 보겠다. 繼親子關係는 증래의 韓國慣習에도 不拘하고 그 範圍는 당연히 繼父子關係에 까지 擴大되고 있는 點, 繼親子關係의 法的 效果가 扶養關係에 關聯하여서만 發生하는 點 등, 그 原則에 있어서, 다를 바 없다. 또 再婚이라는 事實 그 것이 곧 繼親, 繼子 사이에 일정한 扶養效果를 發生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繼親, 繼子 등이 扶養되어야 할 實質을 구비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繼子の 實親이 生存하는가의 與否, 繼親子가 같은 家族成員을 이루느냐의 與否 등의 實質的인 要件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 비로소 繼親子關係의 法律效果인 扶養權利義務가 發生 한다는 蘇聯의 先例⁴⁰⁾ 를 좇고 있다.

그러나 繼親子關係를 인정하는 北韓法의 根拠를 弱者에 대한 經濟的 扶助만을 이유로 인정하는 蘇聯法에만 두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北韓에서는 北韓社會의 특유한 이유로 말미암아 繼親子 특히 繼母子 사이의 生活扶助는 당연히 宿命的인 것으로 보고 이것을 既定事實로 하여 蘇聯法原理로써 다시 合理化하고 있는 느낌이 짙다. 繼親子關係를 인정하는 根拠에 대한 다음과 같은 說明, 即, 「繼親·繼子間에 전혀 아무런 法的 關係도 發生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런 關係조차 없는 單純한 남남끼리에서도 가령 事實上的 養育(取養)이 일정한

權利義務을 發生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또한 우리의 家族
生活의 實質的 狀態 및 인민대중의 法意識 속에 形成되어 있는
傳統的 觀念 등을 고려할 때 이들 사이에 전혀 아무런 關係도
認定하지 않는 것은 確實히 실지사태에 부합되지 않으며 合目的的
이 不되기 때문이다」⁴¹⁾ 라고 하는 表現은 바로 이러한 點을 잘
說明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로 미루어 보아 社會主義의 추세나 蘇聯의 先例가 어떠한 繼
親子 사이의 扶養權利義務은 아직까지 傳統에 의하여 適用되는 點
이 많을 것이며, 따라서 家族制度的인 意識이 支配하고 있는 만큼,
繼親子間의 扶助意識은 높을 수 있고, 나아가서는 繼親子關係의 法
的 効果는 때에 따라 扶養義務의 範圍를 넘어선 領域까지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扶養義務에 있어서 繼親, 繼子
사이의 엄격한 要件들도 사실상 不必要한 것으로 될 것이다. 北
韓과 같은 家族制度的 沿革을 가지고 있는 中共婚姻法이 繼親子關
係에서 일어나는 權利義務 등을 明文化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理
由에서라고 짐작된다.

4. 養親子關係에 관한 問題

近代養子法의 目的이 養子の 利益을 위하는데 있음은 의심할

바 없고, 蘇聯을 비롯한 社會主義諸國의 立法도 이와 같은 內容을 定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養子法은 北韓社會의 特性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點에서 傳統的 色彩를 띠어 其餘의 社會主義諸國과는 다른 特色을 이루고 있다.

첫째, 死後養子의 形式을 지금도 취하고 있다. 夫와 死別한 獨身의 妻가 養子하고자 할 때, 妻의 姓을 따르게 하지 아니하고 死別한 夫의 姓을 養子의 姓으로 정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 같다. 이러한 現狀은 遺妻가 死亡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出生한 子女들을 현재 養育하고 있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 이러한 일은 비록 家系維持를 위하여 養子を 맞이하는 死後養子制度와는 그 實質에 있어 다르다 하더라도, 그 形式에 있어서는 父系血緣意識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傳統的 養子制度와 흡사하다.

둘째, 入養 後 養子が 子女를 出生한 때, 養親과 養子의 子女 사이에는 祖孫間의 關係가 發生한다.

셋째, 養子 및 그의 子女를 一方으로 하고 養親의 父母 또는 親子女 기타의 친척들을 他方으로 하여, 이들 사이에 親族關係가 認定되는가에 관한 問題이다. 北韓法에는 이를 밝혀 주는 明文이 없어 모호하지만, 蘇聯法은 이를 否定的으로 다룬다. 入養契約을 전적으로 近代의 意味로 보고, 入養의 目的을 전적으로 養子의 利

益을 위하는 것으로 볼 때 蘇聯法の 態度는 論理上 妥當하다.

왜냐하면 入養契約은 當事者인 養親과 養子사이의 契約이며 그들 이외의 어떤 사람도 參與될 수 없고, 入養은 養子 이외의 어떠한 사람의 利益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 蘇聯에서는 入養契約當事者인 養親과 養子 사이에서만 특별한 法律效果가 발생됨에 그치기 때문에, 養자와 養親의 親 사이에는 서로 扶養의 權利義務도 없을 뿐 아니라, 그들 사이는 서로 禁婚 되지도 않는다.

이러함에도 不拘하고 北韓法の 態度는 오히려 積極적인 立場을 취하고 있다. 北韓法上 通說的인 解釋論에 의하면, 「養子 및 그의 子女를 일방으로, 하고 養親의 親戚(父母, 子女, 其他)을 타방으로 하여 이들 간에 養親의 親子女와 養親의 親戚들과 사이에 存在하는 것과 同一한 關係를 認定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養子制度에 관한 傳統的 觀念과 실지사태에 일치한다. 또한 우리에게서 入養은 養子로 될 아이를 위하여 養親의 家族 내에서 가장 好適한 生活과 教養의 條件을 지어 주려는데 주되는 課業이 있는 만큼 이 課業을 가장 원만히 실현하는 견지에서 이 結論은 入養의 課業과 目的에 부합된다. 만일 養子は 養親과 사이에서만 父母子女의 關係가 認定되고 養親의 父母에 대한 關係에서나 或은

養親의 子女에 대한 關係에서는 孫子女의 지위도 兄弟姊妹의 지위도 가지지 않고 法的으로 남남 끼리라고 한다면 入養의 課業을 실현함에 결코 긍정적일 수 없을 것이다」⁴²⁾라 밝히면서, 거기에서 北韓養子法이 「이 점을 明示하지 않고 있는 事實은 이러한 結論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解釋된다」⁴³⁾고 말하고 있다.

위의 解釋論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들 사이에 일정한 法律效果를 認定하는 것은 確實히 「傳統的 意識」과 「實際의 事情」에 부합된다. 바꾸어 말하면 이 두가지의 事情의 存在는 곧 北韓養子法으로 하여금 삼든 좋든 간에 家族制度的 要因을 계속 지니게 하는 契機를 이루는 것이다.

傳統的 家族制度의 意識은 이처럼 法律效果를 받는 사람들의 範圍를 넓혀 줄 뿐만 아니라, 그 意識은 그러한 親族關係가 이미 消滅된 사람 사이의 關係를 規律함에 있어서도 때에 따라 規範力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養親子關係에 있었던 사람이 서로 婚姻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자. 養親子 사이에는 法定親子關係가 發生함으로써, 養親과 養子は 서로 婚姻할 수 없다. 그런데 北韓現行法⁴⁴⁾에 의하면, 婚姻關係에 놓여 있는 사람이 養親으로 되는 경우, 반드시 夫婦가 공동으로

로 養子함을 要求하지 아니함으로 45).46) 養親子關係에 놓여 있지 않는 相對便配偶者와 養子와의 사이는 法律上 어떠한 親族關係도 發生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그 相對便配偶者는 그 養子들 다시 자기의 養子로 삼을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強制規定이 없어 兩者 사이에서 새로운 養親子關係를 맺지 않는 한 論理上 서로 婚姻할 수 있는 사이가 되고 만다. 47) 그러나 北韓의 家族倫理上 이들 사이의 婚姻의 成立은 실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蘇聯法의 理論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또한 다음과 같은 데에서 일어난다. 蘇聯法에 의하면 養親과 養子は 그들이 養子關係가 계속되는 동안은 결코 서로 婚姻할 수 없으나, 入養의 無効, 取消 및 罷養이라든가, 養親사이의 離婚 등으로 因하여 親族關係가 終了되면, 養親子關係에 놓였던 當事者는 서로 婚姻締結上의 障礙를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法理上의 解釋이 北韓社會에서 그대로 通用되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四. 其他의 家族法關係와 傳統的 家族制度

北韓家族法은 夫婦關係 및 父母와 未成子女의 關係라는 두가지의 身分關係를 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婚姻法과 親子法이 北

韓家族法의 대부분을 占하게 된다. 그러나 北韓은 北韓社會의 傳統的 家族制度의 尙存으로 말미암아, 身分法的 效果는 비단 이 두가지의 關係에서만 發生될 수 없고 기타의 여러사람들 산에서 發生될 수 있다. 이들 사이의 身分法的 效果는 주로 扶養의 權利義務로서 나타나니 결국 우리는 夫婦와 父母子女이 외의 자로서 서로 扶養의 權利義務있는 자들에 편의상 기타의 家族 關係者로서 把握하여 그들 사이의 傳統的 家族法意識을 찾아 보고자 한다.

첫째, 祖父母와 孫子女 사이에는 서로 일정한 扶養義務關係에 선다. 祖父母는 未成年子女를 扶養할 義務가 있다. 그러나 成年의 孫子女라 하더라도 그들이 生活能力이 없을 때는 역시 扶養의 義務를 진다. 祖父母의 이 義務는 孫子女에게 父母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子女扶養의 能力이 없는 경우에 發生되며, 祖父母에게 그들을 扶養할 수 있는 資力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成年孫子女도 能力없는 祖父母를 扶養할 義務가 있는데, 이 義務 역시 父母들이 없거나 그들이 能力없는 경우에 한해서 發生한다.

둘째, 兄弟姊妹 사이에서도 일정한 조건아래서 서로 扶養의 權利義務가 인정되고 있다. 資力을 가지고 있거나 勞動能力있는 成年의 兄弟姊妹는 자기의 未成年의 兄弟姊妹와 能力없는 成年兄弟姊妹를 扶養할 義務가 있다. 특히 이 중 能力없는 成年兄弟姊妹를 다른 兄弟

姉妹가 扶養한다는 것은 西洋式의 合理的思考로써는 도저히 있을 수 없으니, 이러한 점이 곧 社會主義社會에 있어서의 北韓의 特徵 이라고 할 수 있다. 兄弟姉妹사이의 이 扶養義務는 扶養을 要하는 다른 兄弟姉妹가 父母 등으로 부터 扶養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생긴 물론이다.

이와같이 扶養의 權利義務는 祖父母와 孫子女사이, 兄弟姉妹사이에 도 認定되고 있는 실정인데, 北韓의 실정은 이에 局限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정한 身分關係에 놓여 있는 사람들, 예를들면 曾祖父母와 曾孫子女는 물론이고 시부모와 며느리사이, 장인장모와 사위사이, 叔姪사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現實的으로 共同生活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 사이에도 역시 扶養義務가 있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III. 結 論

— 家族制度的 諸要因에서 본 韓國法の 正統性 —

叔上에 言及한 바와 같이 韓國의 家族法은 韓國의 傳統的 家族制度인 宗法制度의 男系血統繼續主義와 族外婚制를 그 骨格으로 維持하면서 그것에서 演習되는 諸般 規定 중에서 특히 個人의 自由와 個性의 伸張을 沮害하거나 또는 男女平等에 顯著히 違背되는 것에 한하여 先進諸國의 立法例를 參酌·繼受함으로써 漸進的 民主化를 志向한 立法이므로 韓國의 傳統을 傳承發展시켰다 하겠으나, 韓國民族史의 見地에서 보아 正常하고 自然스러운 흐름이라 하겠다.

이에 反하여 北韓의 家族의 規律은 韓國의 傳統的 家族制度를 封建的 殘滓라 하여 이를 一擲하고 社會主義的 家族의 創造를 志向한 것이니 韓國民族史의 歪曲的 轉換을 꾀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점에도 不拘하고 위에서 窺知되는 바와 같이, 北韓의 家族規律에 있어서도 韓國의 傳統的 家族制度의 規定을 부분적으로나마 受容하고 있어 韓國의 傳統的 家族制度로부터 完全히 離脫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여기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原因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하나는 北韓이 家族

規律에 있어 社會主義的 革命을 志向하면서도 그 大綱만을 規定하고 아직 詳細한 實定法을 갖추지 못하여 家族法分野에서는 革命過程의 中間法時代를 맴돌고 있어 法の 欠乏의 틈이 있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北韓社會가 社會主義體制를 完成하지 못하여 家族이 담당하여야 할 責務가 아직 남아 있어 그 責務의 遂行을 위하여는 韓國의 傳統的 家族制度에 의거함이 便宜한 때문이며, 끝으로 가장 重要한 것은 韓國의 傳統的 家族制度는 高麗 中葉 以後 解放前까지 7百餘年間 勵行된 것이므로 이것은 韓民族의 習俗 또는 倫理가 되어 強壓에 의하여 一時에 扞拭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韓民族은 意識的·無意識的으로 그에 依準한 家族生活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北韓은 社會主義革命을 推進하는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는 傳統的 家族制度에서 演繹되는 상당 부분의 規範을 갖게 되고, 이 結果 韓國과 北韓의 家族法은 지금으로서는 完全한 異質感을 주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에 있어 社會主義體制가 完成되고 傳統的 家族制度에서의 生活을 한 旧世代가 없어지고 社會主義體制에서의 生活을 하면서 자라난 世代만이 社會를 담당하게 되어 그에 따라 社會主義的 家族法이 制定, 實施됨으로써 家族의 社會主義的 革命이 完成되는 날에는, 北韓은 韓國의 傳統的 家族制

度を 完全히 扞拭하게 되므로 韓國과 北韓은 必然코 家族生活에 있어서 異質性을 띠게 된다.

家族은 社會의 基本單位이다. 한 民族이라 하더라도 家族生活의 習俗과 倫理를 달리하면 異邦人과 다름없는 感을 갖게하고 異民族이라 하더라도 家族生活의 習俗과 倫理를 같이하면 親近感을 갖게 한다. 筆者도 일찌기 中國의 林語堂 著 「Moment in Peking」 이라는 小說을 읽을 때에 中國의 家族生活의 描寫가 어떻게나 우리의 그것과 흡사한지 不知中에 韓國小說을 읽고 있는 것으로 錯覺하고 또한 中國人에게 親近感을 가진 기억이 있다. 따라서 筆者의 念願은 北韓에 있어 韓國의 傳統的 家族制度가 殘存하여 南·北韓民이 彼此에 生活上의 異質感을 갖게 되기 이전에 韓半島의 統一이 이루어지고, 韓民族 傳來의 傳統的 家族制度가 기리 溫存되어 이 民族史가 正常하고 自然스러운 길을 걸었으면 한다. 만일 統一이 遲延되어 北韓에 家族革命이 完成되어 傳統的 家族制度가 扞拭된 후에 南·北韓이 統一되면 南·北 兩域의 人民은 家族生活의 習俗과 倫理를 달리하여 異邦人과도 같이 서먹서먹하여 融和를 이루기란 매우 어려우며 兩者間의 生活의 同化와 交婚으로 인한 親族的 結緣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時日이 必要할 것이다. 따라서 韓國과 北韓의 民族的 融和도 많은 努力과 時日을 必要로 하는 難境에 처할 것이다.

参 考 文 献

- 1) 極東問題研究所, 『共產圏資料』, 1974.1. 서울, pp.24~5.
- 2) 조선여성사, 1962. 『전국어머니대회문헌집』. 평양, p.276.
- 3) 과학출판사, 1960. 『조충친선농업협동조합농민들의 문화와 풍습』, 민속학연구총서 제4집. 평양, p.152.
- 4) 『김일성선집』제5권에는北韓法上の 이러한 理論을 뒷받침해주는 여러가지 말이 있다. 주목할 만한 곳이다.
(同選集, p.448.).
- 5) 前掲 『共產圏資料』 p.25.
- 6) Hazard, J.N., 1969, Communist and their law. The univ. of Chicago press, Chicago, p.271.
- 7) 혁신사, 1964. 『정당사』. 평양, p.381.
- 8) 同書, p.349.
- 9) 1972年 8月5日字 박원호씨의 증언. 박씨는 鉄原郡 社会安全部 大尉로 勤務하다가 1967年 8月 월남귀순하였으며, 지금은 大韓通運株式会社에서 勤務하고 있다.
- 10) 蘇聯婚姻家族法이 적절한 实例라 보겠는데, 蘇聯은 1918年 法에 依하여 民事婚을 宣言한 뒤 現行法の 制定까지, 事實婚의

認定 또는 否定 등 많은 우여곡절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 준다.

11) 韓國休戰協定 第1條 第2項을 보면 「雙方 軍司令官은 非武装地帶 二分之一에 대해서 各己 民事行政 및 救濟策을 講究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軍事境界線 以北의 非武装地帶國民의 婚姻關係도 당연히 이 範圍內에 들어 간다.

12) 蘇聯婚姻家族法 第10條 第3項 2號.

13) 中共婚姻法 第5條 1號.

14) 조일호, 1958, 『조선가족법』. 교육출판사. 평양, pp.84~5.

15) 조일호, 前掲書, pp.83~4.

16) 中共婚姻法 第5條 1號 後段

17) 어머니쪽의 조카에 해당하는 남자 또는 여자를 뜻한다.

18) 同條例 第7條 2號 (福島正夫, 宮坂宏編訳, 1966, 『中華ソビエト共和国中国解放地区婚姻法資料〔改訂版〕—中国革命根拠地法制資料 第1集—』, p.85.

19) 독일민법 第1310條.

20) 中国民法 第983條

21) 前者는 同條例 第6條3號이며, 後者는 同條例 第7條3號이다.

(前掲 『中華ソビエト共和国 中国解放地区婚姻法資料』, p.50. p.85).

22) 韓国民法 第 809 条 第 2 項.

23) 韓国民法 (第 767 条, 第 769 条), 日本民法 (第 725 条) 의 태도가
그러하다. 그러나 兩國을 제외하고 配偶者關係를 親族關係로
보는 先進民主立法例는 거의 없다.

24) 1946年 8月 29日字 「勞動大衆의 統一的 党的 創建을 위하여」
라는 演說에서 (『김일성선집』 第 1卷, p.170).

25) 조일호, 前掲書, p.29.

26) 韓国民法 第 769 条. 이 韓国民法上的 姻戚概念은 中國의 그것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中共의 慣行은 「血族의 配偶者의 血
族」은 여기서 제외하고 있다.

27) 男女平等權에 對한 法令施行細則 第 3 条

28) 조선여성사, 1962, 『전국어머니대회문헌집』. 평양, p.282.

29) 蘇聯婚姻家族法 第 11 条 第 1 項.

30) 同法 同条 第 2 項.

31) Schlesinger, R., 1949, Changing Attitudes in the Soviet
Russia. The Family in the U.S.S.R. Routledge & Kegan
Paul Limited, London, p.386.

- 32) 韓國은 中國社會에서 흔히 보는 女子無姓은 거의 없다. 이것은 女子에 대한 權益保護를 위해서 이기보다 철저한 男系血緣을 구별하기 위함이었다.
- 33) 조일호, 前揭書, p.106.
- 34) 北韓의 實務에서도 婚姻과 關聯해서 配偶者의 姓을 變更시키는 데 이러한 規定들이 適用된 사례는 전혀 없다고 한다. (조일호, 前揭書, p.107).
- 35) 收養子는 그 本姓을 稱함이 原則이나, 三歲 이하의 棄兒를 收養할 경우에는 收養父의 姓에 따르게 한다. (朝鮮總督府中樞院, 1933, 『民事慣習回答彙集』 p.86).
- 36) 조일호, 前揭書, pp.102~3.
- 37) 조일호, 前揭書 p.202.
- 38) 韓國民法 第 773 條, 자세한 點은 第 909 條~第 927 條.
- 39) 子女保護를 위한 中共의 다음 法制은 주목할 만하다. 「夫는 그 妻가 養護하는 前夫와의 사이에서 出生한 子女를, 妻는 그 夫가 前妻와의 사이에서 出生한 子女를 虐待 또는 차별해서는 아니된다」(中共婚姻法 第 6 條)
- 40) 蘇聯婚姻家族法 第 21 條, 러시아共和國 婚姻家族法 第 81 條.
- 41) 조일호, 前揭書, p.213.

42) 同書, p.203.

43) 同書, 同面

44) 北韓養子法의 주된 法源은 「점양의 설정에 관하여」라는

1949년 12월 31일자 內閣指示 第473号인데, 그 뒤 「戰爭

孤兒들에 대한 점양 수속절차에 관하여」라는 1952년 7월

26일자 內閣指示 第167号가 추가되었다.

45) 이 경우 相對便配偶者의 同意는 必要 要件이다.

46) 이러한 法制의 태도는 蘇聯法 특히 러시아共和國婚姻家族法

第104條 第1項과 같은데, 家族制度的 意識의 有無에 따라서

그 받아 들여지는 모습은 전혀 다르다.

47) 이와 같은 일어날 수 있는 모순을 제거하기 위하여 夫婦는

共同해서 養親이 되어야 한다는 立法論이 있다. (조일호, 前揭

書, p.197).